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 2.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제5조 중 “제4조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6조 중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정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 ] 신체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신청내용	장애의 상태	
	장애인근로자의 취급 업무	
	장애인근로자의 작업 능력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지급하려는 시간 당 임금액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시간 당 임금액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필요한 사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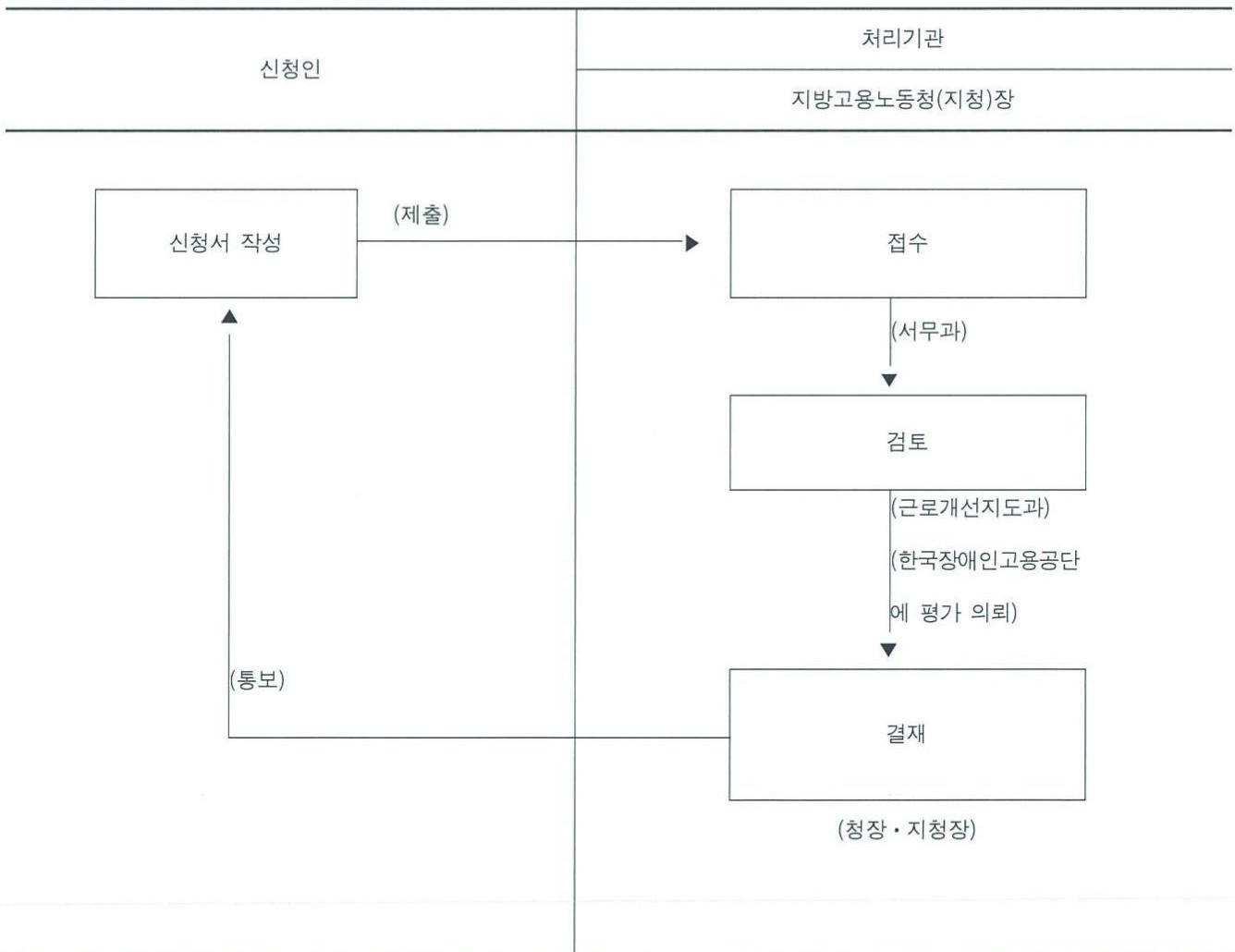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취업업무가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 수행하지 않는 작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2. 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업무는 구체적으로 전부 적습니다.  
 예)쇼핑백제작 : ①쇼핑백 상단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음 ②쇼핑백 안쪽으로 간지를 넣음 ③ 쇼핑백 하단을 팔각형 모양이 되게 접음  
 부품 조립 : ①탁자위에 부품1과 부품2 놓기 ②부품1을 부품2에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고 돌리기 ③부품1과 부품2를 박스에 넣기
3. 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비교하여 취업업무 전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예)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00개, 부품조립 70개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50개, 부품조립 100개
4.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의 평균작업능력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최근 입사한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한 작업량으로 측정하고,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백분율 값으로 표시합니다.(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능력이 같을 때의 백분율 값은 100입니다) 다만, 백분율 값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비교하여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90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